

부산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3377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김경호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5.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8. 21. 접수 제22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8. 21. 접수 제2206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699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14.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63,941,900원 및 그 중 40,763,604원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4.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망인은 2018. 5. 14.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F, 자녀인 D, G, H, 피고가 있었는데, D, G은 각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1803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였고, 2018.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F, H, 피고는 2018. 8. 2.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6990 사건의 판결에 따라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D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지 않고 이를 피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²⁾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이 2018. 5. 14.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F, 자녀인 D, G, H, 피고가 있었는데, D, G은 각 2018. 6. 11.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1803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F, H, 피고는 2018. 8. 2.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2018. 8. 2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와 같이 D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

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한 것인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상속을 포기한 D, G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F, H과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와 D 사이에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지 않고 이를 피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별 지 목록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 89.3㎡

의 전체 지분 중 4분의 1지분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 지상

월근로크리트, 벽돌조, 불박조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73.85㎡

2층 73.85㎡

3층 43.44㎡

지하1층 12.25㎡

의 전체 지분 중 4분의 1지분

1)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

2) 원고는 청구원인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설행하여 판단한다.